

2017년도 일반(협동)감사 결과

2018. 1. 4.



광주과학기술원 감사실

2017년도 일반(협동)감사 결과

1. 감사 개요

가.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기간 : 2016. 10. ~ 2017. 9.(1년)
- 감사대상부서 : 행정행위를 추진하는 집행부서 중심

나.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7. 11. 13(월) ~ 11. 24(금) (2주)
- 감 사 인 : 감사부장 외 8인(외부감사인 3인 포함)

구 분	성 명	비고
반 장	○ ○ ○	감사총괄
내부반원	△ △ △	행정 전반
	□ □ □	
	▶ ▶ ▶	
	● ● ●	
	■ ■ ■	
협동감사인	▷ ▷ ▷	연구분야
	◆ ◆ ◆	계약분야
	◇ ◇ ◇	재무분야

2. 감사 결과

가. 총괄 : 지적사항 21건, 처분요구 22건

지 적 건 수		주의 (인원)	개선	권고
총 건수	신분상 조치 인원			
21건 (기관운영 18건, 연구관리 3건)	8명	4건 (8명)	15건	3건

나. 신분상 조치인원 내역

지적사항	처분내역			
	조치양정	소속	직급	성명
직접구매 부적정	주의	가가팀	책임행정원	△△△
	주의	나나팀	행정기능원	□□□
	주의	다다팀	책임행정원	▶▶▶
	주의	라라팀	행정원	●●●
행사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주의	마마팀	책임행정원	■ ■ ■
	주의	바바팀	행정원	▷▷▷
수입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사사팀	책임행정원	◆◆◆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	주의	아아팀	책임행정원	◇◇◇

3.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요약서

구분	처분요구	제목	주요 지적내용	조치할 사항
1	개선	학사과정 조교(수업, 실험) 수당 지급방법 개선	학사과정조교운영지침에 의거 1주10시간범위 내에서 실제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매월1회 정산지급하여야 하나, 현재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음. 근무시간 산정 후 정산 지급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수당 지급액의 형평성이 저해됨	▶실험, 수업조교 조교수당 지급 방법 개선
2	주의	사용부서 직접구매 부적정	계약업무요령 제40조(계약체결의뢰), 제64조(기타계약)에 따라 추정가격 1백만원 이하의 공사와 1백만원 미만의 용역의 경우에 한하여 사용부서에서 직접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해당금액 초과 건에 대하여 부서 직접구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업무를 위반 운영하였음	▶전 부서에 계약업무요령을 준수할 것을 안내(계약팀) ▶위반부서에 규정위반 고지, 추후 재발방지 주의 촉구 ▶관련자 주의 조치
3	개선	원규관리기록대장 관리 미흡	원규관리요령 제31조(전자원규의관리)3항에 의하여 각 원규별로 제정, 개정에 관한 이력과 시행일, 공포번호와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제정 및 개정시마다 원규 1부씩을 첨부하여 원규관리기록대장을 기록,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하지 않고 있음	▶원규관리요령에 따라 원규별로 제, 개정에 관한 사항을 전자원규의 규정별 연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별표 5호의 양식으로 오프라인상의 원규관리기록대장이 필요한 지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
4	주의	행사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매경-GIST 포럼 행사와 관련하여 실행예산변경 시기 부적정(행사종료후 편성), 실행예산변경승인 전결권 행사 부적정(총장 사후보고)과 집행부적정(지연처리, 계약의뢰 없이 지급신청처리) 등 규정 미준수	▶행사 개최 전 실행예산을 확보하여 집행시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주의 촉구 ▶관련자 주의 조치
5	개선	무기계약직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포상심의 부적정	감사대상기간동안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포상 심의를 정규직원에 적용되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함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지침 개정(직원인사위원회 위임규정 신설 또는 각 지침에 인사심의회 포상 조항 신설)
6	개선	직원 타업행위 신고 누락 및 지침 일부 개정	직원 타업행위 지침에 외부기관에 출강 및 자문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2주전에 타업행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원(○○○)은 사설교육기관에 2017. 1월부터 7월까지 총14회 출강, 3회의 자문을 수행하면서 외부강의 신고서만 제출하였음	▶직원타업행위지침 제2조(원칙) 및 제3조(종류)에 의거 출강 및 외부기관 자문시 관계규정 준수(일정기간 반복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타업행위 승인을 받도록 지침 정비 필요)토록 안내 ▶타업행위 종류 중 벤처창업은 '직원겸직에 관한 지침'으로 이관 조치

구분	처분요구	제목	주요 지적내용	조치할 사항
7	개선	외국인 강의전담 특별전임직 교원 자녀학자금 지원 근거 미비	GIST 대학 강의전담 특별전임직 교원에게 교직원자녀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교직원자녀학자금 지급지침에 지급 근거가 없이 지급이 되고 있음	▶외국인교원에 대한 자녀학자금 지원에 대해 교직원자녀학자금 지급지침에 지급 근거 조항 신설
8	개선	소액지불준비금(현금) 제도 관련 규정의 개정	지출업무 시스템이 금융기관의 이체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어 모든 지출이 실시간으로 개인별 계좌에 이체 입금되고 있기 때문에 동 규정의 제정취지가 소멸된 상황이고, 금전사고예방 및 회계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현금출납을 지양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금취급을 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회계부서가 소액지불준비금제도를 운영할 필요는 없으며, 현재 소액지불준비금 운영하지 않고 있음 ▶회계규정21조(자금의 수입과 지출)3항, 수입지출요령 30조~33조 현실에 맞게 개정
9	권고	연구사업비로 취득한 장비와 감가상각비의 처리에 관한 개선	연구사업비로 취득한 장비는 원가의 차감항목으로 처리, 매년 발새하는 감가상각비는 당기비용을 처리, 이러한 부외자산을 손익으로 반영함으로써 수익 과대 계상, 과소 계상 등 기관 손익계산서가 연구활동 결과를 왜곡하여 표시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부외자산을 출연잉여금 중 연구시설잉여금으로 처리, 부외자산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는 출연잉여금 중 연구시설잉여금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여 손익계산서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있음 ▶현 부외자산회계처리방향의 적정성 검토 필요
10	권고	고정자산관리요령 개정 검토	고정자산관리요령 별표 제6호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중 차량운반구의 내용연수는 5년으로 되어있음, 조달청 고시 2016-40호 내용연수에 따르면 차량에 대한 내용연수는 9년으로 정하고 있음	▶조달청 고시 기준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내용연수와 연계하여 개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2017년 회계결산시 반영여부를 검토
11	개선 주의	수입업무처리부적정	감사기준일인 2017.10.31일 현재 수입의뢰 및 수입확인 절차가 생략된 채로 수입계좌에 입금되어 매일 은행잔고를 파악하고 일계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수입지출 요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회계절차를 준수하여 회계장부와 거래계좌의 잔고가 매일 일치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 개선 등 방안 마련 ▶관련자 주의 조치

구분	처분요구	제목	주요 지적내용	조치할 사항
12	개선	가족수당 중복지급 확인 절차 개선	가족수당 지급지침에 의거, 배우자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이며 소속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불가하나 부양가족 신고시 공공기관 임직원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음	▶가족수당지급지침제5조(지급제한)에 따라 제한 지급하는 경우 해당자의 소속기관에 확인하는 절차를 제도화하여 시행 ▶부양가족신고서 양식 개정: 직업란에 구체적으로 표시 및 해당기관의 재직부서 작성 필요
13	개선	법인카드 포인트 관리 부적정	법인신용카드사용지침제11조에 의거, 법인카드사용으로 발생한 인센티브(포인트 등)는 법인카드 관리비용이나 기관자체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2010년 ~ 현재까지 누적포인트를 수입처리하지 않고 있음	▶누적된 포인트 활용방안 강구 (법인카드 관리비용 사용계획 수립 추진 또는 잡수입 처리)
14	개선	계약업무요령 개정(입찰공고 조항 구체화)	계약업무요령제18조(입찰공고) 공고기간의 경우 최저낙찰제 기준으로만 기술, 낙찰자 결정방법 및 고시금액 기준에 따라 다르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공고 내용의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 및 계약기간(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등 입찰과 관련된 중요 정보가 누락되어 있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3조,제35조,제36조를 참조하여 계약업무요령 현행화 필요 - 낙찰자 결정방법과 고시 금액에 따라 입찰공고 기간 구분하여 명시(7일, 15일, 40일) - 낙찰자 결정방법의 구체적 명시 검토 필요
15	개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개선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사업부서에서 주최/기술평가위원은 내부 직원을 과반수로 하여 구성하고 있음	▶평가위원회의 공정성 및 객관성 담보, 불필요한 민원 방지를 위해 외부위원 구성비를 적정비율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16	개선	원내 공공요금 관리시스템 개선	창업진흥센터 입주기업이 납부하는 공공요금은 매월 고지되므로 업체사정 또는 시차에 따라 미납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 시설운영팀이 발행하는 고지서를 우리은행 창구수납 후 재무팀 수입확인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계좌이체나 자동이체 등의 다양한 납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납부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어 정확한 미납액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원인임	▶공공요금의 납부방법을 다양화하고, 납부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함
17	주의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	비전자기록물전수조사계약(2016.8~, 계약자:알엠소프트)는 계약종료 2개월전 작업대상량 추가사유로 2017년 1월계약 변경 추진 제안요청서 과업량은 50,000권 상당의 비전자기록물 계약 체결후 14,000원(약28%)작업량 추가, 계약금액증액없이 계약기간만 연장되었음	▶국가계약법시행령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조건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과업의 증감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조정을 통하여 계약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필요 있음 ▶관련자 주의 조치

구분	처분요구	제목	주요 지적내용	조치할 사항
18	권고	지적재산권을 연구목표로 설정한 과제의 지적재산권 출원 등록비 계상 의무화	2017년 11월기준, 2017년에 개시한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과제의 지적재산권출원·등록비 계상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36개과제 중 연구목표로 지적재산권을 설정한 과제는 16개이나, 이 중 연구비 예산에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를 계상한 경우는 1개과제에 불과함 지적재산권을 연구목표로 설정하였으나 해당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를 연구과제에 계상하지아니한 15개 과제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정부출연금 재원의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예산에서 부담이 불가피함	▶ 지적재산권을 연구목표로 설정한 과제에 대하여는 지적재산권 출원 등록비를 연구과제에서 부담토록 관리
19	개선	종료 연구과제의 연구노트 관리 미흡	연구노트관리지침에 의거,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하며, 소유·보관·공개·폐기는 소정절차를 거쳐 진행토록 되어있음. 감사일 현재 연구개발사업 종료후 연구노트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2016년말 기준, 연구종료후 최장 6년(2011.10.31.) 이 경과하였고 상당 건이 미제출된 상태임	▶지침위반시 연구자 및 연구책임자를 규제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시행 ▶종료된 연구과제의 연구노트 제출, 향후 연구과제종료시 연구노트 제출 시기를 준수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20	개선	분석료 계정 설정 부적정	공동연구장비운영지침에는 시험분석료를 납부한 경우 비연구사업 (R)계정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R계정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 공동장비 운영 부서에 수입을 실시간으로 확인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수입확인 후 바로 예산편성 요청, 매년 연구비결산 시점에서 미편성액의 경우 기관잡수입으로 흡수처리 필요	▶감사일 기준 R계정 미편성된 8개부서 시험분석료 관리 철저 ▶시험분석료의 수입과 동시에 R계정 연동으로 예산편성되도록 회계시스템 구축 관리
21	개선	입주기업의 원활한 퇴거를 위해 계약만료 3개월전에 입주연장 신청을 하도록 관련지침 개정	창업진흥센터운영지침(제14조)에의거, 입주기업이 창업진흥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1년 단위계약, 2회 연장 포함)이며, 예외적으로 지방중기청 담당과장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3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음 입주기간 연장은 계약기간 만료30일전까지 신청 접수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통보하게 되어있는 바, 연장승인을 받지못한 기업은 퇴거 및 이전에 필요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입주기업의 연장신청을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하도록 하고,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심의결과를 통보하도록 관련 지침 개정